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 육성사업』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신규 도약기업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기술혁신성과 성장역량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 육성사업」에 신규로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3월 9일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목적

- 장기적 성장역량을 갖춘 기술집약형 기업을 발굴하여 Post-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전북자치도 발전을 선도할 핵심기업으로 육성

2 선정개요

- 선정규모 : 12개사 (단,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지역균형발전)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의 10%내외 쿼터제 실시
- 지정기간 : 지정연도로부터 3년 (2026년 ~ 2028년)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운영기관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공고기간 : 2026. 3. 9.(월) ~ 4. 10.(금) 18:00
- 접수기간 : 2026. 3. 9.(월) ~ 4. 10.(금) 18:00
- 지원내용

지원연도	내 용	
2026년	레벨업패키지	○ 20백만원 限 / 자율지원(기술개발 / 공정개선 / 마케팅 등) ○ 신규 지정기업 전체 지원
	기 타	○ 역량강화교육, 동·이업종 간 네트워킹 등
2027 ~2028년 (예정)	기술개발	○ 90백만원 限 / R&D
	성장트랙	○ 30백만원 限 /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마케팅 자율 지원
	ESG경영진단	○ ESG경영 기반 ISO 인증취득 지원

※ 2027~28년 : 각 세부 사업별 별도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운영내용 변경 가능

3 신청 자격

구 분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	
신청 자격	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의 “제조업(C10~C33)”, “정보통신업(J582, J62~J6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0)” 사업자 (공장등록증 등 공식자료 기준)
	매출기준	• 전년도 결산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업 력	• 결산 2회 이상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 사 자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근무(대표자 제외)
	연 구 소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운영 중인 기업 •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운영 중인 기업 • 연구소기업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생산시설)을 보유·운영하는 기업
신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기업 (졸업기업 포함, 도움기업 제외) • 월드클래스(300 및 플러스) 기업 (졸업기업 포함) • 기타 본 사업과 유사한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특례조건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소멸 고위험 7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선정기업의 10% 내외를 쿼터제로 선발	

[용어의 정의]

- ① 대상업종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11차)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산업분류 검색 및 상담 : <http://kssc.mods.go.kr>

구 분	상위코드	산업분류	하위코드
제 조 업	C	제조업	10 ~ 33 : 제조업 분야
정보통신산업	J	정보통신업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 정보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 : 연구개발업

- ② 사 업 장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자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이 행해지는 장소로, 상품의 단순 보관·관리·전시·주문·업무연락 등을 위한 장소는 해당하지 않음
- ③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 ④ 등록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
- ⑤ 종 사 자 : 2026년 3월 9일(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 ⑥ 연 구 소 :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연구소기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
- ⑦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 :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4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내용 : 선정 도약기업(42개사) 대상, 제한 경쟁을 통해 3년간 사업지원

지원사업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레벨업 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주제 패키지 지원 기술개발(R&D),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인증 획득, 박람회 참가, 마케팅 등 기업 수요에 따른 자율 지원 	1차 연도 기업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전체지원)
기술개발 (R&D)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異)업종 간 기술협력을 통한 제품 및 기술개발 현(現) 주력제품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신기술 적용, 미래 먹거리 창출 등 기술개발 	2차~3차 연도 기업	기업당 최대 90백만원
런닝메이트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개발(R&D) 연계 고도화 멘토링 지원 	기술개발(R&D) 선정기업	사업계획서 컨설팅
성장트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주제 패키지 지원 기업별 역량 수준에 따른 지원분야 자율 선택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마케팅, 인증지원 등 	2차~3차 연도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ESG 기반 ISO 인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기반 ISO 인증서 취득 지원 	1차~3차 연도	15개사 정도
기술도약 실증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케일업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현장 실증 적용 지원 	2차~3차 연도	기업당 최대 40백만원
도약기업 네트워킹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공유를 위한 기업 간 네트워킹 교류회 추진 	1차~3차 연도	4회 정도
동반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사다리 기업간 거래·협업 활성화 지원 	1차~3차 연도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혁신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사다리기업 혁신포럼 운영 지원 등 	1차~3차 연도	-

※ 각 세부 사업별 별도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운영내용 변경 가능

5 연계 프로그램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및 이차보전 우대

○ 지원내용 : 이차보전 지원한도 및 이율 우대

구 분	일반기업	우대기업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억	기업당 최대 7억
이차보전	2.0%	3.0%

○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기업
- 상세내용은 하단 공고문 참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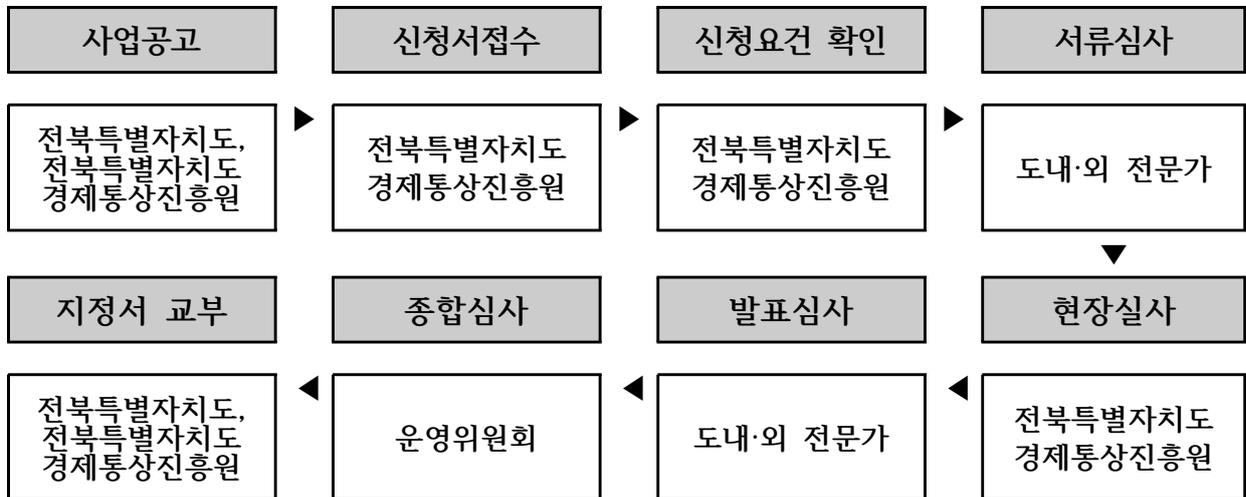
○ 성장사다리 선정 전 경영안정자금 기지원기업 우대이율 소급적용 불가

6 선정 방향

-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중심 기반의 중소기업 선정
-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속성장을 위해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
-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매출 생산능력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
- 사업성·미래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비전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

7 선정 절차

-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배점

구 분	서류심사	현장실사	발표심사
배 점	100점	현장실사	100점
가·감점	최대 10점 가산	-	최대 5점 감점
선정규모	24개사	-	12개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항목별 40점 미만은 과락 • 서류심사 40%·발표심사60% 반영 • 각 트랙별 고득점 순 		

□ 심사단계별 선정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1단계) 서류 심사	배 점	110점	심사장소	(재)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선정규모	24개사 ※가점 포함 40점 미만 탈락	심사위원	도내·외 전문가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제반서류 확인, 신청요건 확인, 서류 심사 평가표 등 심사 ○ 신청서 기준 기업의 혁신 기반, 재무건전성, 가산점 등을 심의 ○ 신청서 기준 기업의 향후 성장잠재력(보유 기술·제품경쟁력 확보 전략, 자금 조달 방안 등) 심의 		
(2단계) 현장 실사	배 점	-	실사장소	신청기업 지정장소
	선정규모	-	실사위원	사업 담당자
	실사방법	○ 신청서 기준 질의응답 및 현장 확인 등(기업별 30분 내외)		
	참석대상	○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 등		
실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서류 사실여부 확인, 기업환경, 경영상태 등 심사 ○ 신청기업의 연구개발 역량(보유·운영 상태), 기술혁신 역량(기술 확보 수준), 시장확대 역량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토 			
(3단계) 발표 심사	배 점	100점	심사장소	(재)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선정규모	12개사 (서류40%, 발표60%) ·각 트랙별 고득점 순	심사위원	도내·외 전문가
	심사방법	○ PPT 발표 및 질의응답 등 발표심사 (발표 10분, 질의 10분)		
	참석대상	○ 대표자(전문경영인) 필수참여 권고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 CEO의 경영전략 발표 및 인터뷰를 통한 혁신기반, 혁신활동, 기술경영 등 심사 ○ 신청서, 대표자 발표 등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질의·응답 실시 ○ 대표자(전문경영인) 발표심사 불참 시 감점 처리 			
(4단계) 종합 심사	위원구성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심사대상	○ 12개사(서류, 발표심사 통과 기업)		
	심사방법	○ 서류심사, 현장실사, 발표심사 결과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종합적으로 심의 후 최종 선정		

□ 심사단계별 평가항목

○ 서류심사(1단계)

구분	세부분야	심사항목	배점
경영기반 (20)	경영역량	• 대표자 지분 20% 이상 보유	2
		• 세금 체납/연체 사실 없음	1
		•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 소재	5
	근로자 수	• 종사자 수(상시근로자)	2
	연구역량	• 연구개발 부서 현황	5
		• 연구개발 전담인력 보유	5
혁신활동 (30)	혁신활동	• Ino-biz, Main-biz, Venture • 조달 우수/혁신 제품, MAS 등록 • 품질규격 인증(NET, HACCP, ISO 등)	7
	지식재산권	• 국내/외 특허, PCT, 실용신안, 의장 등	8
	성장잠재력	• 보유 기술 ·제품경쟁력 확보전략, 자금 조달 방안 등	15
재무건전성 및 경영성과 (50)	• 매출액(직전년도)		10
	• 수출액(직전년도)		10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증가율		10
	• 최근 3년간 고용증가율		5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비중		5
	• 유동비율(직전년도)		5
	• 부채비율(직전년도)		5
합 계			100

※ 가산점(최대 10점)

구분	세부내용	배점	비고
인증 및 수상	• 정부 및 광역지자체 포상/표창, 수출의 탑 수상	2점	• 실적보유: 1점/건
	• 수출 유망중소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 우수중소기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지정기업 (前 도지사인증상품) / 가족친화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기업 / 장애인기업		
ESG 경영	• 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 (일몰)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2점	• 실시유형: 1점/건 (최대 1점) • 대상인원: 1점/인 (최대 1점)
	• 육아휴직제도 실시기업 • 유연(탄력)근무제도 실시기업	2점	• 실시유형: 0.5점/건 (최대 1점) • 대상인원: 1점/인 (최대 1점)
	• 사회공헌활동 실적 보유	1점	• 실적보유: 1점
	• 기업 ESG 등급 보유	1점	• 등급보유: 1점
기타	• 투자 IR 실적 보유	1점	• 실적보유: 1점
	• 최근 3년 내 본사 및 사업장 전북 이주기업 (타지역에서 전북으로 최초 이전)	1점	• 실적보유: 1점

○ 현장실사(2단계)

- 실사방법 : 총괄책임자, 연구소장 등 면담 및 현장 점검
- 실사장소 : 신청기업 현장사무소
- 소요시간 : 기업면담 10분, 현장확인 10~20분
- 실사내용 : 신청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기업환경, 경영상태 등

구분	심사지표		실사결과		
			양호	보통	미흡
경영환경	기업환경	◦ 근로자의 근무 여건 및 사무 환경			
		◦ 생산 현장 위험물 관리 및 안전대책 등			
		◦ 공장 주변 환경 및 안전관리, 청결 상태 등			
	생산관리	◦ 생산 설비 보유 및 운영 현황			
◦ 공장 및 품질관리 운영 현황					
연구소 현황	연구개발 인프라	◦ 연구개발 인력 현황			
		◦ 연구개발 공간 구성 및 운영 실태			
		◦ 연구기자재, 시설, 장비 가용 여부 및 유지상태 등			

○ 발표심사(3단계)

- 소요시간 :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감점사항 : 대표자 미참석(-5점), 대리발표(-2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경영혁신	• 경영계획의 목표 및 적정성, 조직관리의 체계성	20
	• CEO 경영혁신 의지	10
혁신활동	• 지역일자리 창출 및 연관산업 파급 효과	10
	• 미래 제품(사업) 방향의 적정성	10
	• 시장 확대 전략의 타당성	10
기술경영	• 기술확보 전략 방향성 및 적정성	20
	• 기술의 차별성	10
관심도	• 도약기업 선정 의지 및 지원사업 활용 계획 적정성	10
합 계		100

○ 종합심사(최종 선정심사)

-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대면심사 결과와 지역사회 활동 사항,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종 선정

8 신청 및 접수방법

- 공고/접수일정 : 2026. 3. 9.(월) ~ 4. 10.(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시스템 접수(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접수처 : www.jblc.or.kr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홈페이지)
 - 신청방법 : **회원가입 불필요**, 신청 후 접수마감일 전까지만 첨부파일 수정가능



No	제출서류	비고
1	▪ [서식 1호]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 신청서	필수 제출
2	▪ [서식 2호] 도약기업 서류심사 작성양식	
3	▪ [서식 3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 [서식 4호] 청렴 서약서	
5	▪ 사업자등록증	
6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기업에 한함)	
7	▪ 주주명부(법인기업에 한함)	
8	▪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또는 연구소기업 인정서 ※ 인정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급본 ※ 제출기준: 인정서, 신고서,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기자재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9	▪ 중소기업 확인서 ※ 발급처: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인정기준: 국세청 홈택스(국세) / 정부 24에서 발급(지방세)	
11	▪ 재무제표('22년, '23년, '24년, '25년) ※ 제출기준: 재무대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제조원가명세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 2025년도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가결산 자료 제출 가능	
12	▪ 종업원 수 증빙자료('23년, '24년, '25년, '26년 공고일) ※ 인정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제출기준: ('23~'25년) 12월말 기준, ('26년)2026. 3. 9. (공고일) 기준	
13	▪ 공장등록 증명서 ※ 발급처: 정부24	해당시 제출
14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발급처: 공공구매종합정보망	
15	▪ 혁신활동 취득 증빙 서류 ※ 해당서류: Ino-biz, Main-biz, Venture, NET, HACCP, ISO, TS, SQ, 우수조달제품인증, 혁신제품, MAS, NET, NEP, HACCP, ISO, 녹색인증, KS, 고효율에너지인증, Q/K, 검, 열, 전, GD, NT, KC, GP, GR, GQ, EM, 환경, 태극, TL, OHAS, TTA, FDA 식품시설 등록, HALAL, GMP, IA, TF, CE, G-PASS 등 ※ 인정기준: 녹색기술 인정 시 녹색기술제품 불인정, "신고확인서" 인정불가	
16	▪ 지식재산권 취득 증빙 서류(국내/외 특허, PCT, 실용신안, 디자인 등) ※ 해당서류: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 국제특허(PCT), 프로그램 ※ 인정기준: 등록 완료된 건 (출원 불인정)	
17	▪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빙서류('23년, '24년, '25년) ※ 직접수출 인정기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간접수출 인정기준: KTNET 발행본(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	

No	제출서류	비고
18	▪ 정부(장관상 이상) 및 지자체(광역자치단체 이상) 포상 및 표창	가 산 점
19	▪ 수출의 탑 수상	
20	▪ 기업 인증 지정서 ※ 수출 유망중소기업, 유망중소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지정기업 ※ 가족친화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21	▪ 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제출기준: 실시 협약서 및 청약서, 적용 명단 포함	
22	▪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실시기업(취업규칙 및 증빙서류) - 실시유형: 기업 내규(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관련 내용 명시 - 대상인원: 공문, 육아휴직 확인서 등 실시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서, 적용 명단 포함	
23	▪ 사회공헌활동 실시 기업 ※ 제출기준: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 (기부금 명세서(법인/대표자), 기부 영수증(법인/대표자), 1365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대표자), 언론보도 등)	
24	▪ 투자 IR 실시 기업 ※ 인정기준: 입금완료일 기준 ※ 제출기준: 투자금 입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투자계약서, 입금확인서, 통장사본 등)	
25	▪ 기업 ESG 등급 진단서 ※ 제출기준: 기관/민간/개인 컨설팅을 통해 발급받은 ESG 진단서	
26	▪ 전북특별자치도 이주기업 ※ 인정기준: 최근 3년('23년 ~'26년 공고일)내 본사 또는 사업장 이주기업 ※ 제출기준: 당초 주소 및 전북자치도로 이전한 일자를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서류	
27	▪ 기업 및 제품소개 자료(카탈로그, 기타 자료 등)	
28	▪ 기타 해당 기업의 경쟁력, 기술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발급일 기준 :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
- * 증빙서류 인정기준(3개년) : 2023.01.01. ~ 2026.03.08.(유효기간 내)
- 재무제표는 2022년도 ~ 2025년도 말 기준으로 제출

9 유의사항

- 접수기간 내 전산 미등록된 기업은 신청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 ※ **접수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일 시스템 오류 등 접수 및 신청자료 보완 불가할 시, 해당 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접수 마감일 이후 보완서류 접수는 불가합니다.
 - ※ **제출을 누락하거나 인정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서류 제출 시, 해당 심사항목은 "0"점 처리됩니다.**

- 도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정철회 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선정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숨기고 도약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본 사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내외부로부터 청탁(부탁 포함)이 들어올 경우 해당 기업은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R&D) 지원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에 따라, 성공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금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상위단계에 지정될 경우, 해당 사업에서 조기 졸업되며,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돈육기업 → 도약기업 → 선도기업 → 혁신기업 → 강소기업
-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공고일 기준)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①~⑪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①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역행기업(상위단계에서 하위단계 진입불가)
-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 ③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④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중에 있지 않은 기업
- ⑤ 법정관리 중인 경우
- ⑥ 대기업
- ⑦ 개인회생 .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 ⑧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있는 기업
- ⑨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및 거짓인 경우
- ⑩ 신청자격의 지원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⑪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10 문의 및 상담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성명	직책	연락처	문의 메일
강철구	선임담당관	063-711-2176	free2456@jbba.kr
안수민	담당관	063-711-2035	asm@jbba.kr
도약기업 육성사업 공용메일			jbdy@jbba.kr

※상기 메일은 문의용으로 신청 서류 접수 시 서류제출 불인정 됨.

11 첨부자료

1. [서식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 신청서
2. [서식 2] 도약기업 서류심사 작성양식
3.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서식 4] 청렴서약서
5. [참고자료 1]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 신청서 작성요령
6. [참고자료 2]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7. [참고자료 3]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 신청기업 자가진단서